

##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26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안 제3조)

- 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라.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본인 및 본인과 친족의 관계,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마. 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안 제9조)

-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연차보고서를 제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9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2)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능 및 관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
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은 군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

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거창군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